

서울특별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9.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56호
2. 발 의 자 : 이효원 의원
3. 발의일자 : 2025년 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II. 제안이유

-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기존에는 용역계약 방식으로 운영되어 학기 초 지원 공백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개선하여 학생 지원의 안정성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사업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정신건강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제7조제2항)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3. 입법예고 : 2025. 8. 20 . ~ 8. 24. (의견 :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11일 이효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956호로 발의되어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정신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¹⁾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생 마음건강증진(자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치유와 회복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²⁾.
- 이 중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상담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지원사업’의 경우 단년도 용역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2024년의 경우에는 전문의 사례회의가 학교의 학사일정 상 1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 6월 이후부터 진행되는 등 학기 초 지원 공백 문제가 반복³⁾되고 있습니다.

1) 제7조(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연계
3. 교직원,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연수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Wee센터 운영 및 Wee클래스 구축,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 사업, 학생 마음건강전문가 학교지원사업 등

3) 동 사업의 2025년 용역 입찰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일이

[표-1] 2024년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개요⁴⁾

구 분	사업내용		
사업기간	2024. 1.~2025. 2.		
추진방식	위탁기관 사업 운영 ※ 지역별 위탁기관과 용역 계약(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운영기관	구분	담당 전문기관명	해당 교육청
	1권역	서울성모병원	강서양천, 남부
	2권역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서초, 동작관악
	3권역	은평성모병원	서부, 중부
	4권역	서울의료원	북부, 성북강북, 동부(동대문구)
	5권역	국립정신건강센터	강동송파, 성동광진, 동부(중랑구)
주요 사업내용	• 심층 평가(학생, 보호자, 담임교사 포함) 및 상담 • 전문가의 전문기관 연계 치료 필요 판단 시 외부 기관 연계 •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판단 하에 병의원 연계시 치료비 지원 • 보호자·학교 관리자·(담임)교사 자문 및 교육(학교 신청 시)		

[표-2] 2024년 학생마음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추진 실적 중 전문의 사례회의 횟수⁵⁾

구분(월)	3	4	5	6	7	8	9	10	11	12	계
사례회의 횟수	0	0	0	86	69	15	65	63	27	24	349

○ 이러한 상황은 단년도 용역 계약의 사업 특성상 사전 절차에 소요되는 준비기간 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사업 추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구체적인 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 방식이 제한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안 제7조제2항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맡길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2025.3.25.이므로 올해 시행 또한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4)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 제출(1720번)’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3508, 2025. 8. 14.)

5) ‘2024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결과보고’ (민주시민교육과, 2025.6.)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경우 민간위탁을 허용⁶⁾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 위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 개정조항은 사업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사업별 민간위탁 여부는 별도의 검토를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사업별 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운영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등 관련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 8. 20.).⁷⁾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박소현(2180-8265)

6)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7)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행정관리담당관-10439, 2025. 8. 20.)